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6 - 578호

손해평가사 행정처분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위반에 따른 손해평가사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2026년 11월 0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손해평가사 행정처분서 통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3. 공고기한

2026.11.09. ~ 2026.11.23.(14일간)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

4. 공고 대상자 및 내역

가. 행정처분서 통지 대상자: 5명

<table>
<tr><td>처분의 제목</td><td colspan="4">손해평가사 경고</td></tr>
<tr><td rowspan="2">처분당사자</td><td>성 명</td><td>김○완('57.12월생)</td><td>자격번호</td><td>18****</td></tr>
<tr><td>주 소</td><td colspan="3">경기도 김포시(이하 생략)</td></tr>
<tr><td>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4">당사자가 2025년 7월 28일 참여한 (적과전종합) 착과수조사와 2025년 11월 9일 참여한 콩수확량 표본조사에 대한 검증조사 결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4(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의 마목 위반이 확인됨</td></tr>
<tr><td>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4(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의 마목 1회 위반에 따른 경고</td></tr>
<tr><td>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4">「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0(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업무 정치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별표2의4
2. 개별기준
<table>
<tr><td rowspan="2">위반행위</td><td rowspan="2">근거 법조문</td><td colspan="3">처분기준</td></tr>
<tr><td>1회 위반</td><td>2회 위반</td><td>3회이상위반</td></tr>
<tr><td>바. 그 밖에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td><td>법 제11조의6제1항</td><td>경고</td><td>업무정지 1개월</td><td>업무정지 3개월</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d>처분의 제목</td><td colspan="4">손해평가사 경고</td></tr>
<tr><td rowspan="2">처분당사자</td><td>성 명</td><td>김○진(‘67.2월생)</td><td>자격번호</td><td>23****</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이하 생략)</td></tr>
<tr><td>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4">당사자가 2025년 10월 12일 참여한 벼수확량 표본조사와 2025년 12월 11일 참여한 당근수확량 조사에 대한 검증조사 결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4(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의 마목 위반이 확인됨</td></tr>
<tr><td>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4(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의 마목 1회 위반에 따른 경고</td></tr>
<tr><td>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4">「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0(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업무 정치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별표2의4
2. 개별기준
<table>
<tr><td rowspan="2">위반행위</td><td rowspan="2">근거 법조문</td><td colspan="3">처분기준</td></tr>
<tr><td>1회 위반</td><td>2회 위반</td><td>3회이상위반</td></tr>
<tr><td>바. 그 밖에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td><td>법 제11조의6제1항</td><td>경고</td><td>업무정지 1개월</td><td>업무정지 3개월</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처분의 제목</td><td colspan="4">손해평가사 경고</td></tr>
<tr><td rowspan="2">처분당사자</td><td>성 명</td><td>박○경(‘63.8월생)</td><td>자격번호</td><td>21****</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이하 생략)</td></tr>
<tr><td>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4">당사자가 2024년 5월 26일 참여한 양파수확량 표본조사와 2025년 7월 8일 참여한 (적과전종합) 착과수조사, 2025년 11월 8일 참여한 콩수확량 표본조사에 대한 검증조사 결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별표2의4(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의 마목 위반이 확인됨</td></tr>
<tr><td>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4(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의 마목 1회 위반에 따른 경고</td></tr>
<tr><td>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4">「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0(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업무 정치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별표2의4
2. 개별기준
<table>
<tr><td rowspan="2">위반행위</td><td rowspan="2">근거 법조문</td><td colspan="3">처분기준</td></tr>
<tr><td>1회 위반</td><td>2회 위반</td><td>3회이상위반</td></tr>
<tr><td>바. 그 밖에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td><td>법 제11조의6제1항</td><td>경고</td><td>업무정지 1개월</td><td>업무정지 3개월</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처분의 제목</td><td colspan="4">손해평가사 경고</td></tr>
<tr><td rowspan="2">처분당사자</td><td>성 명</td><td>원○성('60.2월생)</td><td>자격번호</td><td>18****</td></tr>
<tr><td>주 소</td><td colspan="3">경기도 양주시(이하 생략)</td></tr>
<tr><td>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4">당사자가 2024년 10월 31일 참여한 콩수확량 표본조사와 2025년 10월 17일 참여한 벼수확량 표본조사에 대한 검증조사 결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4(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의 마목 위반이 확인됨</td></tr>
<tr><td>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4(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의 마목 1회 위반에 따른 경고</td></tr>
<tr><td>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4">「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0(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업무 정치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별표2의4
2. 개별기준
<table>
<tr><td rowspan="2">위반행위</td><td rowspan="2">근거 법조문</td><td colspan="3">처분기준</td></tr>
<tr><td>1회 위반</td><td>2회 위반</td><td>3회이상위반</td></tr>
<tr><td>바. 그 밖에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td><td>법 제11조의6제1항</td><td>경고</td><td>업무정지 1개월</td><td>업무정지 3개월</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처분의 제목</td><td colspan="4">손해평가사 경고</td></tr>
<tr><td rowspan="2">처분당사자</td><td>성 명</td><td>이○성('62.2월생)</td><td>자격번호</td><td>23****</td></tr>
<tr><td>주 소</td><td colspan="3">경기도 용인시(이하 생략)</td></tr>
<tr><td>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4">당사자가 2024년 9월 27일 참여한 벼수확량 표본조사와 2025년 8월 11일 참여한 고추 생산비조사에 대한 검증조사 결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4(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의 마목 위반이 확인됨</td></tr>
<tr><td>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4(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의 마목 1회 위반에 따른 경고</td></tr>
<tr><td>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4">「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0(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업무 정치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별표2의4
2. 개별기준
<table>
<tr><td rowspan="2">위반행위</td><td rowspan="2">근거 법조문</td><td colspan="3">처분기준</td></tr>
<tr><td>1회 위반</td><td>2회 위반</td><td>3회이상위반</td></tr>
<tr><td>바. 그 밖에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td><td>법 제11조의6제1항</td><td>경고</td><td>업무정지 1개월</td><td>업무정지 3개월</td></tr>
</table></td></tr>
</table>

5. 주의사항

1)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12조의10 및 별표 2의4에 따라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